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5. 2. 12.)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

가. 개정이유

❍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중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

❍ 사무의 위탁·대행 기관 중 “법인 및 단체”를 추가함(안 제1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다. 관계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예시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해당되고 기업협의체의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 등으로 이전될 경우, 운영비 등의 지원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소산업은 포항시 특화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산 지원을 위해 조례에 지출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 사업을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수소 기업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포항시 수소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